

# MINEC 학술상 규정

제정 2021. 3. 2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치의학회(이하 "학회")가 제정하고 (주)메가젠임플란트가 후원하는 MINEC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취지)** 본 상은 디지털치의학 분야에 연구 업적이 있는 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.

**제3조(명칭 및 시상의 종류)** 이 규정에 따라 시상하는 상은 Megagen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& Clinical Research의 약자인 MINEC을 사용하여 'MINEC학술상'이라 칭하고, 대상과 금상 2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.

**제4조(수상 후보 대상 및 후보자격)** ① 수상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공고된 신청마감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자
  2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치과의사 또는 치의학 관련 업무 종사자
  3. 디지털치의학 분야의 연구 업적이 있는 자
  4.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SCI, SCIE, KCI 중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디지털치의학 학문 관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발표업적이 있거나 디지털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
  5. 공고일 기준 대한치의학회영문학회지(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)에 디지털치의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자
  6. 본 상 중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거나 금상 수상 후 만 3년이 경과한 자
- ② 그 밖에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5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본 상을 시상하지 아니한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3.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자

4. 추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.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7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상이 부적합한 경우

**제6조(수상 취소)**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,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
1. 학술 업적 내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

**제7조(추천서 접수)** 매년 5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. 추천서는 대한치의학회 회원학회장 또는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작성한 것에 한한다.

**제8조(구비서류)** 추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접수마감일까지 대한치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추천공문 1매
- ② 추천서 1매
- ③ 피추천자의 업적, 공적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(소요부수는 매년 개별통지)
- ④ 피추천자의 이력서 1매
- ⑤ 사진(상반신 명함판) 3매

**제9조(심사위원회)** ① MINEC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MINEC학술상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를 둔다.

- ② 심사위원회는 치의학회 부회장 1인(위원장), 치의학회 이사 4인, (주)메가젠임플란트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총 7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,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 선임시 별도로 정한 임기로 한다.

**제10조(수상자 결정 및 시상)** 수상자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,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한다.

**제11조(시상금액 및 후원기관)**

- ① MINEC학술상의 상금은 대상 2,000만원, 금상 1,000만원으로 한다. 단, 상금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후원기관의 사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② MINEC학술상의 상금은 (주)메가젠임플란트가 후원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. 3. 26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① 제4조 제1항 제5호는 2022년 후보자 추천부터 적용한다.

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이사회의 최종결의에 대하여는 여하한 이의도 응하지 아니한다.